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성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 및 운영(안 제3조)

-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함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관리·운영

○ 시설사용료(안 제4조 ~ 8조)

구 분	규 격	사 용 료		비고
		성수기 (7월~8월)	비수기 (1월~6월 9월~12월)	
오토캠핑장	8m × 9m	20,000	17,000	
	10m × 10m	25,000	22,000	
캠핑사이트	6m × 7m	10,000	7,000	
	8m × 10m	15,000	12,000	

- 시설사용료의 감면
-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반환

○ 시설의 사용제한(안 제9조 ~ 12조)

- 시설의 사용제한 및 시설사용권의 양도 · 대여 금지
- 사용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등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안 제13조 ~ 16조)

-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이 원칙
-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 위탁계약의 해지
- 수탁자의 의무

○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안 제17조 ~ 18조)

-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 지원
-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2조, 제20조의2, 제76조

나. 예산조치 : 50,000천원 정도

다. 입법예고 : 2015. 11. 5 ~ 11. 25(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성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 제3조에 관리 및 운영
- 안 제4조에 시설사용료(별표) 규정
- 안 제5조에 예약방법, 제6조에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범위
- 안 제7조에 사용료 징수방법, 제8조에 사용료의 반환
- 안 제9조에 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에 양도 및 대여금지
- 안 제11조에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에 시설피해 손해배상
-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관리위탁 방법 및 위탁기한 연장
- 안 제15조에 위탁계약 해지조건, 제16조에 수탁자 의무사항
- 안 제17조에 운영경비 지원, 제18조에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야영장 등에서 발생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시「금수문화공원 넉바우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야영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상대적 보상차원에서라도 야영장 운영 참여 희망” 의견에 대하여도 지역민 일자리창출과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